

서울특별시 소재 초등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위반사례 실태조사 연구

김 은 주[†]

협성대학교 보건관리학과

A Survey on the Violation Cases at School Environment Sanitation and Purification Zones

Eunjoo Kim

Department of Health Management, Hyupsung University

ABSTRACT

In actuality, as most of harmful businesses running at school environment hygiene purification zones are stationeries with game rooms, comic book stores, PC rooms, etc., which are highly accessible to students, they become serious problems in school environment.

The present study conducted a survey of violation cases at school environment sanitation and purification zones around 21 elementary schools in Seoul.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first, to investigate harmful environment around schools regulated by the School Health Act, and second, to suggest plans to improve harmful environment around school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our survey, illegal acts and facilities observed at school environment sanitation and purification zones are as follows. Amusement pubs/room saloons occupied 52.5%, singing rooms 15.4%, game rooms 15.1%, billiard clubs 4.3%, gambling houses 4.3%, hotels/motels/inns 3.6%, cartoon shops 2.6%, video rooms 1.0%, LPG storages 0.7%, and infectious disease hospitals/detention hospitals/detention facilities 0.7%.

As it is required to make continuous and systematic surveys and researches on the environmental hygiene around schools, we need to manage school environment efficiently through cooperation among the government, education offices and individual schools.

key words: School health, School environment

접수일 : 2006년 11월 20일, 채택일 : 2006년 12월 6일

†교신저자 : 김은주(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 14번지 445-745, 협성대학교 보건관리학과)

Tel: 011-364-4643, Email: albert@uhs.ac.kr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인간은 자신이 속한 사회·문화적, 물리적 환경 등에 영향을 받으며 그에 따라 나름대로의 특성을 형성하게 되며 사회화된다. 즉, 인간은 주변 환경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성장하고 사회적 존재로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를 중심으로 오랜 시간을 보내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있어 학교환경은 학습효과뿐만 아니라 인격 형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1950년대부터 세계보건기구뿐만 아니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및 아동기금이 학교를 통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킨다는 것을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학교보건은 학생 및 교직원, 가족 더 나아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학생, 교직원 및 보건 의료 전문가가 참여하여 보건교육, 환경위생,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유지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포괄적인 건강사업이다.

우리나라 학교에 있는 학생과 교직원수는 전체인구의 28%를 넘는다(교육인적자원통계 서비스, 2006). 특히 초등학생수가 전체 학생 수의 34% 정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시절의 올바른 건강행위는 청소년 및 성인기의 건강습관으로 이어지게 된다.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생활을 하는 동안에 교육이라는 고유한 기능을 통해서 건강에 관한 지식을 올바로 배우고,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건강한 행동습관을 형성하여 건강한 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학교보건 활동을 하고자 할 때, 학교보건사

업의 지침이 되는 것이 학교보건 기본방향이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교보건 활성화를 위해 매년 1월에 ‘학교보건기본방향’을 각 시·도 교육청으로 시달하며, 이것을 기본으로 각 시·도 교육청에서 실정에 맞게 보완하여 각 학교로 시달한다.

각 시·도 교육청에서 시달되는 학교보건 기본방향의 내용으로는 크게 학교보건의 목표, 기본방향, 계획수립, 학생 건강증진, 학생 신체검사, 학교 환경 위생 개선, 기타 등으로 나누어진다. 이것을 기본으로 보건교사가 학교보건사업을 계획하고 수행 및 평가를 한다. 이러한 학교보건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 뒷받침되어 주어야 한다(전소은, 2003).

그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학교 내에서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등·하교 길에 비교적 많은 시간을 학교 주변에서 보내므로 학교 주변 환경은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의 학교 주변은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많은 유해환경이 생겨났다. 이런 유해환경은 학교 교육의 효율성을 저해시키고 있으며,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을 자극하고 있다. 더욱이 유해환경과의 잦은 접촉은 탈선의 가능성을 높인다.

사회적으로 학교 교육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학교 내 환경에 국한되지 않고 학교의 주변 환경에 까지 확산되었고 어떻게 하면 학교 주변 환경을 정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졌으며 이러한 학교보건환경에 대한 논의는 마침내 관련 법률의 제정으로 결실을 보았다.

정부는 학교주변 환경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1967년 3월30일 법률 제 1928호 학교보건법 제5조와 제6조에 규정하여 유해시설 및 행

위를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학교 주변 환경관리를 위하여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를 절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고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의 지역 중에서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였다. 동법 제6조 제1항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등을 규정하였다.

그간 교육관련 부서에서는 학교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학생들에게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일으키는 업소들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아직 까지 학교 주변에는 상당수의 유해업소들이 잔존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주변의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현행 학교보건법규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학교주변 유해환경의 실태를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 21개교를 대상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위반사례 실태조사를 통해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 저해 여부를 알리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보건법규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학교주변 유해환경의 실태를 조사한다.

둘째, 현장조사를 통하여 학교주변 유해환경 문제점을 분석한다.

셋째, 학교주변 유해환경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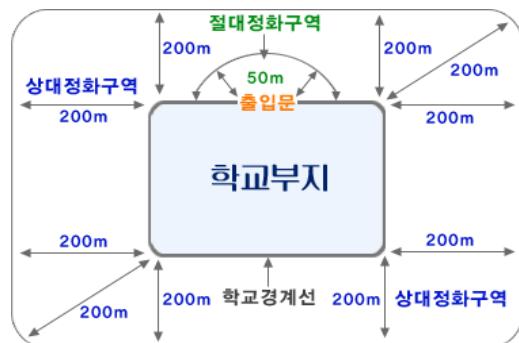
II. 이론적 배경

우리나라에서 산업화와 도시화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1970년대를 전후로 하여 학생 및 교직원들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고 학교 교육의 능률화를 기하며, 또한 학교의 보건 관리와 깨끗하고 건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청소년의 탈선 및 비행을 예방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함으로써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1967년 학교보건법을 제정·공포하였다.

학교보건법의 구성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보건시설, 제4조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제5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설정, 제6조 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등, 제7조 신체검사, 제8조 등교증지, 제9조 학생의 보건관리, 제10조 예방접종 완료여부의 검사, 제11조 치료 및 예방 조치, 제12조 학생의 안전관리, 제13조 교직원의 보건관리, 제15조 학교의사·학교약사 및 보건교사, 제16조 보건기구의 설치 등, 제17조 학교보건위원회, 제18조 경비보조, 제19조 별칙 등 총 19조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학교주변의 유해환경은 날로 심각한 수준에 직면하고 있으며 건전한 청소년 교육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학교주변의 비교육적인 유해환경을 정화하여 학습 분위기 조성 및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으나, 학교보건법의 구성내용 중에서 다만 제 5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설정, 제6조 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등, 제19조 별칙 등의 3개 조항만이 학교주변의 유해환경을 정화하여 학교 교육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한 목적과 관련이 있다. 학교보건법에 의하면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을 설정하여야 하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으며 <그림 1>에서와 같이 간략화 할 수 있다(제5조①).

다음의 <표 1>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현황을 설명한 표이다. 이러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의 종류로는 대기/수질/소음/진동, 극장/총포/화약/고압/천연/액화가스저장소, 도



<그림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표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종류

법 제 6 조 제 1 항	구 분	초 중 고		유치원 대학		비 고
		절대 구역	상대 구역	절대 구역	상대 구역	
	제1호 대기/수질/소음/진동	×	×	×	×	배출허용/규제기준 초과시설
	제2호 총포/화약 및 고압/천연 /액화석유가스제조 저장소	×	○	×	○	
법 제 6 조 제 1 항	2의2호 영화상영관	○	○	○	○	
법 제 6 조 제 1 항	2의3호 제한상영관	×	×	×	×	
법 제 6 조 제 1 항	제3호 도축장/화장장	×	×	×	×	
법 제 6 조 제 1 항	제4호 폐기물수집장소	×	○	×	○	
법 제 6 조 제 1 항	제5호 폐기물/폐수/축산폐수/분뇨처리시설	×	×	×	×	
법 제 6 조 제 1 항	제6호 가축사체/동물가죽가공시설	×	×	×	×	
법 제 6 조 제 1 항	제7호 전염병원/격리병사/격리소	×	×	×	×	
법 제 6 조 제 1 항	제8호 전염병요양소/진료소	×	○	×	○	
법 제 6 조 제 1 항	제9호 가축시장	×	×	×	×	
법 제 6 조 제 1 항	제10호 유홍주점/단란주점	×	○	×	○	
법 제 6 조 제 1 항	제11호 호텔/여관/여인숙	×	○	×	○	
법 제 6 조 제 1 항	제12호 당구장	○	○	—	—	현재결정(97.3.27) 반영
법 제 6 조 제 1 항	제13호 사행행위장/경마장 경륜/경정장(장외발매소)	×	○	×	○	
법 제 6 조 제 1 항	제14호 소위 전화방/성기구업소	×	×	×	×	
영 제 4 조 의 2	제1호 게임제공업/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설비제 공업(PC방)	×	○	—	—	
영 제 4 조 의 2	제2호 특수목욕장중 증기탕	×	○	×	○	
영 제 4 조 의 2	제3호 만화가게	×	○	—	—	
영 제 4 조 의 2	제4호 무도학원/무도장	×	○	×	○	
영 제 4 조 의 2	제5호 노래연습장	×	○	—	—	
영 제 4 조 의 2	제6호 담배자동판매기	×	○	—	—	
영 제 4 조 의 2	제7호 비디오몰감상실 소극장업	×	○	—	—	
영 제 4 조 의 2	제9호 복합유통제공업(1,5,7호 포함시)	×	○	—	—	

주1) 상대적 금지 :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상대정화구역, 당구장은 절대구역포함)안에서 지역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해제)을 받으면 설치가능

주2)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각 호, 동법시행령 제4조의 2근거

주3) ×: 절대적 금지시설, ○: 상대적 금지시설, —: 금지규정 적용제외를 뜻함.

축장/화장장, 폐기물 수집장소, 폐기물/폐수/축산폐수/분뇨처리시설, 가축사체/가축가공시설, 전염병원/격리병사/격리소, 전염병요양소/진료소, 가축시장, 유흥주점/단란주점, 호텔/여관/여인숙, 당구장, 사행행위장/경마장, 게임제공업 시설, 특수목욕장 중 증기탕, 만화가게, 무도학원/무도장, 노래연습장, 담배자동판매기, 비디오물감상실, 전화방, 성기구취급업소 등이 있다(제6조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 안에서는 극장,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폐기물수집장소, 전염병요양소, 진료소,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및 위와 같은 행위 이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시설 중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라고 학교보건법 제6조 ①항에 기재되어 있다.

한편 학교보건법 이외에도 청소년 기본법에 유해한 환경에 대하여 언급되어져 있다. 청소년 기본법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여 청소년 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는 목적으로 따라 제정되었다.

동법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책임으로 모든 국민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서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정화하고 유익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특히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제7조 ③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

경을 정화하고 유익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언론 매체, 영화, 연극 및 간행물 등이 청소년 육성에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였으며(제47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서 이들에게 유해한 업소의 설치나 유해한 행위를 금지토록 하였다.

한편, 학교주변의 유해환경에 대한 외국의 관련제도를 살펴보면 청소년보호 제도는 일본, 독일,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도 다양하게 운용되고 있으며, 일본을 비롯한 서구 여러 나라에서는 청소년 유해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학교주변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교육환경을 보호하려는 각 국의 개별법 또는 특별법 등 무수히 많은 법률 속에 산재해 있는 일본과 서구 독일, 미국의 경우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첫 번째, 일본의 교육환경 보전제도는 「형법」, 「학교보건법」, 「풍속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적 정화에 관한 법률」 등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관공서·학교·도서관·아동복지시설 주변에서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도부현(都道府縣)의 조례로 대지(사용하기로 결정한 토지포함) 경계선에서 200미터 이내의 구역에는 일체금지하고 있다.

후쿠오카현에서는 자동판매기에 의한 도서류 판매·대출을 200미터 이내에서 금지하고 있고 전화방 등의 풍속영업을 금지하고 있으며 아오모리현에서는 500미터 이내, 오오사카현과 후쿠오카현에서는 200미터 이내에서 금지하고 있다.

일본 학교보건법에서는 건강 진단 및 건강 상담, 전염병 예방, 학교보건기사 및 학교의사, 학교치과의사 및 학교약제사, 지방공공단체의 원조 및 국가의 보조 등에 관한 실질적

인 학생 및 교직원들에 대한 보건위생을 담당하고 있다.

두 번째, 독일의 교육환경 보호제도에서는 학교의 위치 결정은 지역지구개발, 도시개발 계획과 밀접한 조율을 거쳐 결정되도록 되어 있어 주거지 내부에 학교시설을 미리 배치하여 학교 교육환경이 공업이나 산업 등의 용도와 혼용되어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더 나아가서 신도시가 개발되면 학교 부지가 먼저 선정되고 그 주변에는 어떠한 유해시설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학교와 지구상세 계획에 관한 내용으로는 일찍이 1830년대에 학교교육환경과 보건위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 충분한 휴식과 놀이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려는 요구가 학교 위치 선정의 주요 과제로 인식되었다. 1933년에 제정된 IAM 아테인현장에선 학교를 주거지에 인접하도록 하여 건강한 교육 환경 조성 및 등·하교길 학생들을 교통위험 등에서 보호하기 위해 도심의 열악한 조건을 보다 새로이 계획하였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학교가 주거지역내에 위치하며 학교를 포함하는 주거지역을 토지이용계획이나 지구 상세계획 등에 의해 엄격하게 포괄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미국의 지역이용 규제(Zoning Regulation) 제도에서는 주거지역과 그 부근에서 특정 행위 및 시설(무기류, 마약류, 주류, 성 지향적 영업 그리고 각종 공해유발 시설 및 행위)을 조례로 금지함으로써 이루어지며, 무기류, 마약류 등은 특별히 학교와 그 주변에서 소지, 매매, 또한 사용할 때 주형법 등에 의거 가중처벌하고 있다.

간접적으로 학교주변 교육환경을 보호하는 제도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주거지역부근에서 성인영화관을 금지하고 있다. “주거지역으로부터 500피트(약 150미터)이내에 성인용 영

화관을 금지한 코비나시의 조례는 합헌적이다.”, “주거지역에 인접한 위치에 성인오락영업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자유를 제한하는 오클랜드시 조례는 유효하다. 왜냐하면 이 조례가 대중의 성인오락행위에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 이 아니라 영업장의 위치를 규제하기 때문이다.”라는 판례가 있었다(김경천, 2001).

III.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한 연구 내용은 학교보건법에 근거를 두었다. 즉,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게 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하여 1967년 3월 30일 법률 제1928호로 공포되고 2002년 8월 26일 법률 제6716호로 11차에 걸쳐 개정된 “학교보건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 주변 환경관리를 위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여, 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등을 명시하고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는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르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설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 설정하되 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중 상대정화구역 내에서는 일부 업종에 대해 관할지역 교육청에 설치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한 장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본 연구의 내용 및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학교보건법과 외국사례를 중심으로 관련 자료

를 분석하였으며, 두 번째로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위반사례를 분석하여 결론을 산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K구에 소재한 초등학교 21개교를 대상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분포된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를 현장조사 하였다. 조사기간은 2006년 9월 30일부터 2006년 10월 2일까지 3일 간 조사원 5인을 통한 직접조사를 실시하였다. 학교보건법에 명시된 절대구역과 상대구역을 구분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현장 조사하였다.

IV. 결 과

학교보건법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설정목적은 학교의 보건위생과 학습환경의 실효

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이 있는 시설 및 행위를 금지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학교 주변 환경관리를 위하여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를 절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고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까지의 지역 중에서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였다. 동법 제6조 제1항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등을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표 1>에서 제시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 행위 및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된 21개교 초등학교의 절대정화구역 내에서는 <표 2>에서와 같이 게임체공업 시설 73.9%, 유홍주점/단란주점 17.4%, 노래연습장 4.3%, 호텔/여관/여인숙이 4.3%로 금지시설이 분포되어 있었다.

<표 2> 절대정화구역 내의 금지시설

구 분	수	%	순위
대기/수질/소음/진동	0	0.0	
액화가스저장소	0	0.0	
도축장/화장장	0	0.0	
폐기물수집장소	0	0.0	
폐기물처리시설	0	0.0	
가축사체/가축가공시설	0	0.0	
전염병원/격리병사/격리소	0	0.0	
전염병요양소/진료소	0	0.0	
가축시장	0	0.0	
유홍주점/단란주점	4	17.4	2
호텔/여관/여인숙	1	4.3	3
당구장	0	0.0	
사행행위장/경마장	0	0.0	
게임체공업 시설	17	73.9	1
특수목욕장중 증기탕	0	0.0	
만화가게	0	0.0	
무도학원/무도장	0	0.0	
노래연습장	1	4.3	3
담배자동판매기	0	0.0	
비디오물감상실	0	0.0	
전화방	0	0.0	
성기구취급업소	0	0.0	
총	23	100.0	

게임제공업 시설이 다른 금지시설에 비해 많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학교 앞에서 운영하는 문구점이나 분식점이 학생들의 정서를 고려하지 못하고 게임시설을 설치하여 이익을 얻고 있었다.

실태조사 과정 중에 나타난 문제점은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에 각종 유흥업소와 오락시설이 편법으로 입주해 학생들이 유해환경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교문을 나서면 PC방과 당구장 등 각종 오락시설이 즐비하고 일부 초등학교 앞에서는 접대부가 나오는 유흥업소들도 밀집되어 있었다.

한편, <표 3>에서와 같이 상대정화구역 내에서는 유흥주점/단란주점이 156개소인 55.3%로 가장 많았고 노래연습장이 46개소인 16.3%, 게임제공업 시설이 29개소인 10.3%, 당구장

4.6%, 사행행위장 4.6%, 호텔/여관/여인숙 3.5%, 만화가게 2.8% 비디오물감상실 1.1%, 액화가스저장소 0.7%, 전염병원/격리병사/격리소가 0.7%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21개교를 조사한 결과 <표 4>에서와 같이 절대정화구역 및 상대정화구역을 포함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는 액화가스저장소, 전염병원/격리병사/격리소, 유흥주점/단란주점, 호텔/여관/여인숙, 당구장, 사행행위장/경마장, 게임제공업 시설, 만화가게, 노래연습장, 비디오물감상실 등이 분포되어 있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유흥주점/단란주점이 160개소인 52.5%로 가장 많았고 노래연습장이 47개소인 15.4%, 게임제공업 시설이 46개소인 15.1%, 당구장이 13개소로 4.3%, 사행행위장이 13개소로 4.3%, 호텔/여관/여인숙이 11개

<표 3> 상대정화구역 내의 금지시설

구 분	수	%	순위
대기/수질/소음/진동	0	0.0	
액화가스저장소	2	0.7	9
도축장/화장장	0	0.0	
폐기물수집장소	0	0.0	
폐기물처리시설	0	0.0	
가축사체/가축가공시설	0	0.0	
전염병원/격리병사/격리소	2	0.7	9
전염병요양소/진료소	0	0.0	
가축시장	0	0.0	
유흥주점/단란주점	156	55.3	1
호텔/여관/여인숙	10	3.5	6
당구장	13	4.6	4
사행행위장/경마장	13	4.6	4
게임제공업 시설	29	10.3	3
특수목욕장중 증기탕	0	0.0	
만화가게	8	2.8	7
무도학원/무도장	0	0.0	
노래연습장	46	16.3	2
담배자동판매기	0	0.0	
비디오물감상실	3	1.1	8
전화방	0	0.0	
성기구취급업소	0	0.0	
총	282	100.0	

소로 3.6%, 만화가게 2.6% 비디오물감상실 1.0%, 액화가스저장소 0.7%, 전염병원/격리병사/격리소가 0.7%로 나타났다.

유흥주점이나 게임제공업 시설은 21개 초등학교별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고 나머지 유해시설은 몇 개 학교에 주로 집중되어 있었다.

<표 4> 조사대상 21개 초등학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의 금지시설

구 분	수	%	순위
대기/수질/소음/진동	0	0.0	
액화가스저장소	2	0.7	9
도축장/화장장	0	0.0	
폐기물수집장소	0	0.0	
폐기물처리시설	0	0.0	
가축사체/가축가공시설	0	0.0	
전염병원/격리병사/격리소	2	0.7	9
전염병요양소/진료소	0	0.0	
가축시장	0	0.0	
유흥주점/단란주점	160	52.5	1
호텔/여관/여인숙	11	3.6	6
당구장	13	4.3	4
사행행위장/경마장	13	4.3	4
게임제공업 시설	46	15.1	3
특수목욕장중 증기탕	0	0.0	
만화가게	8	2.6	7
무도학원/무도장	0	0.0	
노래연습장	47	15.4	2
담배자동판매기	0	0.0	
비디오물감상실	3	1.0	8
전화방	0	0.0	
성기구취급업소	0	0.0	
총	305	100.0	

<표 5> 조사대상 초등학교별 유해시설 수

(단위 : 개)

초등학교	절대구역	상대구역	총	초등학교	절대구역	상대구역	총
A초등학교	2	15	17	L초등학교	2	25	27
B초등학교	8	28	36	M초등학교	0	2	2
C초등학교	0	35	35	N초등학교	2	4	6
D초등학교	0	2	2	O초등학교	0	6	6
E초등학교	0	17	17	P초등학교	0	3	3
F초등학교	0	13	13	Q초등학교	0	17	17
G초등학교	3	55	58	R초등학교	0	5	5
H초등학교	0	1	1	S초등학교	2	9	11
I초등학교	2	11	13	T초등학교	0	0	0
J초등학교	0	20	20	U초등학교	0	0	0
K초등학교	2	14	16				

전염병원/격리병사/격리소는 조사대상 초등학교 2개교에 분포되어 있었다.

<표 5>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시설을 조사대상 21개 초등학교 별로 조사한 결과이다. 초등학교당 유해시설을 보면 조사대상 21개 초등학교 중 주변에 산이나 공원이 있는 T초등학교와 U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유해시설이 없었지만 대다수의 학교가 불건전한 환경에 노출되고 있었다. T초등학교의 경우에는 2002년 환경교육 우수사례로 뽑힌 바 있는 우수학교였다.

그러나 주변에 대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G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주택가와 유흥가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초등학생들의 학습발달과 정서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었다. PC방을 위시로 노래방, 당구장, 여관 등 각종 유해업소로 포위당한 상태이며 정문 앞 단란주점이 간판을 걸고 영업 중이며 학교에서 20M 떨어진 건물에서는 스포츠댄스와 나이트댄스 등의 간판을 걸고 영업행위를 하는 곳도 실태조사 시 지적되었다.

V. 논의 및 고찰

유해환경과 유해성은 환경의 범주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그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연령과 정신적 발달의 정도와 사회의 전통과 문화적 정도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고, 특히 학교주변에서 청소년이나 학생의 유해환경 유해성에 대한 인식은 논리에 따라 혹은 성인과 청소년의 입장에 따라 각기 달리 규정될 수 있다(도종수, 1990).

이러한 상황 때문에 학교 주변 환경에서 학생 혹은 청소년들이 접근할 수 있는 환경 중 이들에게 유해한 환경은 무엇이고 그 환경이 어느 분야에서 어느 정도나 유해한 지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가 않다. 더욱이 학교 주변 환경 중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있는 환경만을 제한하여 그 환경 중 어느 환경이 과연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편이다.

학교주변 향락업소의 실태를 비롯하여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 유해환경의 전반적 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는 YMCA(1989)에서는 청소년 환경의 유해요소로서 불건전한 성적 호기심을 무분별하게 자극함과 동시에 청소년 범죄의 주원인으로서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음란비디오, TV, 성인잡지와 만화 등과 특히 향락업소 등과 같은 유해업소를 주목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유해환경을 비롯한 한국 사회의 향락문화 현황에 대한 동 연구결과에 의하면 청소년 유해환경을 비교적 포괄적이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청소년 유해환경을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방해하는 사회적 문화적 환경”으로 정의하고, 유해환경의 범주는 첫째, ‘학교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학교주변의 유해환경과 둘째, 매스컴 등의 대중매체, 셋째, 전자오락실, 넷째, 만화가게, 다섯째, 비디오, 영화 및 유선방송, 여섯째, 불량출판물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의 유해환경은 주로 음란비디오를 상영하는 곳, 당구장, 다방, 술집, 디스코, 극장 및 유흥가 등(김준호, 1987)과 같은 향락업소 중심의 물리적 환경이나 청소년 잡지, 만화, 신문 등 대중매체와 같은 정보환경의 유해성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유해환경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은 대개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불건전성 등으로 집약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성적 자극 중심의 유해성 요인 인식은 한국 사회가 전통적으로 성적 관련 사항이나 문제의

거론을 터부시하는 사회적, 문화적 풍토에 기인한 면이 없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한국 사회의 전통적 문화풍토는 통념적으로 유해환경으로 간주되는 것들에 있어 구체적인 판단기준에 대한 논란의 여지없이 사회적 유해환경으로 인식되게 하기도 한다(도종수, 1990).

한편 한준상(1991)과 강대근(1984)은 유해환경이란 청소년의 인격적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리적 문화적 사회적 심리적 요소들과 청소년과 주변 환경 요인 간에 이루어지는 유해적인 상호작용의 총화 즉, 영향과 반응관계의 체계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의로 보면 유해환경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할 수 있는 모든 부분 요소들 즉, 사회 심리학적 개념요소, 문화적 요소, 물리적 요소 및 구조적 요소들로써, 상호 작용하는 사물, 외부적 기대와 압력, 상황, 조건 등 모두를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유해환경은 학동기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정상적인 정서발달을 저해하는 것이며, 따라서 유해환경 규제의 주된 목적이 소극적으로는 각종 환경의 유해성으로부터 학동기 아동을 비롯한 청소년을 보호하고, 적극적으로는 바람직하게 성장하고 선량한 행위를 하며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상황과 조건을 형성하는 데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어떠한 유해환경은 청소년에게만 절대적인 의미에서 유해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사회 환경으로부터 일정한 유해성을 척결하고 개선하는 일은 단순히 청소년에게 바람직한 성장조건을 형성시켜주는 차원이 아니라, 가정, 학교, 사회의 무교육적, 탈교육적, 비교육적인 각종 환경공해로부터 인간생존의 의미를 재정립하려는 시도이며 과정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사회 환경의 개선을 위한 철학적 인식에 기초하여 유해환경에 대한 규제는 구

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본적인 전제의 충족이 요구된다.

첫째, 유해환경에 대한 법적, 사회적 관리가 원칙적으로 청소년 생활의 공간과 범위를 축소시키는 시도로 되어서는 안 된다.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소극적 의미의 내용에만 몰두한 나머지 유해성으로부터 청소년들을 격리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자칫 그들을 어느 특정 장소나 환경에 묶어두려는 시도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둘째, 유해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리와 규제는 그 과정이나 절차가 잘 제도화되어 있어야 한다.

셋째, 유해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리는 강권적인 규제와 금지수단 및 설득적인 수단이 적절히 조화되어야 한다. 유해환경의 규제는 청소년을 사회일원으로서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다양한 사회적 노력의 일환이다. 그러므로 유해환경에 대한 사회적, 법적 규제도 사회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사회적, 교육적 노력들과 상호보완적이며 조화를 이루어야만 할 것이다.

유해환경의 규제는 법적 규제를 최소화시키고 지역사회의 시민운동이나 풍속환경과 관련된 업주들의 자율적 통제 관리 형태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경의 유해성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나 대응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는 건전하고 바람직한 할 거리나 관심거리를 가능한 한 많이 제공하여 청소년들에게 보다 나은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유해환경에 대한 자각과 억제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간접적인 처방이 병행되어야 한다.

학교보건법은 1967년에 제정되어 그 동안 10차 개정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학교의 교육 환경 보전을 위한 법적인 도구로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급속한 사회 변화와 경제 활동

의 변화로 학교주변의 교육환경을 보전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학교보건법은 총 1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제5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설정, 제6조 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등, 제19조 벌칙 등의 3개 조항만이 학교주변의 유해환경 정화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즉, 현재의 학교보건법은 대부분 학교의 보건관리와 학교내 환경위생에 필요한 사항을 위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학교주변 유해환경의 정화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보기 어렵다(전의찬, 1999).

또한 현행의 학교보건법에 의하면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의 설정과 그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기준과 그에 따른 운영은 학교보건법의 일부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는 학교보건법의 유일한 벌칙 조항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는 동법 안에 있는 여타의 조항보다 그 중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으로 볼 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법 조항을 학교보건법 안에 일부 조항으로 두어야 할 필요가 과연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 할 수 있으며, 따라서 학교보건법의 일부 조항 형태의 법률체계에서 벗어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관한 독립된 법의 제정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선행 연구와 비교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현장조사인 본 연구결과 절대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실태를 살펴보면 게임제공업 시설 73.9%, 유흥주점/단란주점 17.4%, 노래연습장 4.3%, 호텔/여관/여인숙이 4.3%로 나타났다. 이는 이화여자대학교(2000)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조사에서 학생들의 62.5%가 전자오락이 설치된 문구점이 있다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한 것과 같다. 다만 47.9%가 만화방,

37.4%가 전자오락실, 35.6%가 노래방의 순이었다는 것에 대해 차이가 있다.

또한 상대정화구역 내에서는 유흥주점/단란주점이 55.3%로 가장 많았고 노래연습장 16.3%, 게임제공업 시설 10.3%, 당구장 4.6%, 사행 행위장 4.6%, 호텔/여관/여인숙 3.5%, 만화가게 2.8% 비디오물감상실 1.1%, 액화가스저장소 0.7%, 전염병원/격리병사/격리소가 0.7%로 나타났다. 이는 이화여자대학교(2000)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조사에서 학생들의 80.6%가 전자오락실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전자오락이 설치된 문구점, 노래방, 당구장, PC방의 순으로 응답한 것과 차이가 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실태를 살펴보면 각 영역별 백분율로 나타내었을 때 유흥주점/단란주점이 52.5%로 가장 많았고 노래연습장 15.4%, 게임제공업 시설 15.1%, 당구장 4.3%, 사행 행위장 4.3%, 호텔/여관/여인숙 3.6%, 만화가게 2.6% 비디오물감상실 1.0%, 액화가스저장소 0.7%, 전염병원/격리병사/격리소가 0.7%로 나타났다. 이는 박태은(2003)의 연구에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을 때 멀티게임장이 76.3%, 비디오감상실 4.9%, 숙박업소 3.5%로 나타난 것과 차이가 있다.

학교 주변의 유해시설은 청소년 범죄나 비행을 유발하는 장소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의 금지시설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는 학교 유해 환경 실태를 고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크다 하겠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 21개교를 대상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

구역 위반사례 실태조사를 통해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 저해 여부를 알리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실시하였다.

현장 실태조사 결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실태를 살펴보면 유흥주점/단란주점이 52.5%로 가장 많았고 노래연습장 15.4%, 게임체공업 시설 15.1%, 당구장 4.3%, 사행행위장 4.3%, 호텔/여관/여인숙 3.6%, 만화가게 2.6% 비디오물감상실 1.0%, 액화가스저장소 0.7%, 전염병원/격리병사/격리소가 0.7%로 나타났다.

이처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의 위반사례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교육청의 정화구역 관리학교 지도·점검이 강화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학교보건법령의 제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는 이들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교육행정과 교원들의 부단한 노력은 물론 학교 경영자, 학부모, 지역사회에 학교보건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이들과 연계하는 정책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국내의 경우 학교 주변 환경위생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조사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교육청, 학교당국이 상호 협력 하에 정기적인 자료의 수집과 자료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학교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보건법은 학교주변의 비교육적인 유해환경을 정화하여 학습 분위기 조성 및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으나, 학교보건법의 구성내용 중에서 다만 제 5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설정, 제6조 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등, 제19조 별칙 등의 3개 조항만이 학교주변의 유해환경을 정화하여 학교 교육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한 목적과 관련이 있어 법제의 보완이 요구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법 조항을 학교보건법 안에 일부 조항으로 두어야 할 필요가 과연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 할 수 있으며, 따라서 학교보건법의 일부 조항 형태의 법률체계에서 벗어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관한 독립된 법의 제정이 요구된다.

성장기의 학생들에게 학교 주변 환경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학교 주변 공간이 생활하기에 쾌적하고 안전한 곳이어야 한다. 따라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적절한 기준안 등을 마련하여 향후 학교 환경을 개선함으로서 미래의 사회를 짚어지고 나갈 수 있는 튼튼한 심신을 갖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강대근. 청소년의 사회문화적환경.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청년연구 제7장. 1984.
2. 교육인적자원통계서비스. 교육통계연보. 2006.
3. 김경천. 학교보건법증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001.
4. 김성수. 학교보건론. 보경문화사. 1997.
5. 김준호. 청소년주변유해환경과 비행선도방안. 서울:청소년지도육성회. 1987.
6. 김효선. 학교주변의 유해환경 실태와 교육적 과제. 2001.
7. 도종수. 청소년 유해환경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원. 1990.
8. 박태은. 학교주변 유해환경 개선: 학교보건법 중심으로. 2003.
9. 윤덕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위원회 제도에 관한 연구. 2000.

10. 전소은. 초등학교 보건기본방향 및 보건업무분석. 2003.
11. 전재일. 학교사회사업실천 어떻게 할 것인가?. 1999.
12. 전의찬. 학교환경위생정책구역 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1999.
13. 정환규. 학교환경위생정책구역 제도의 실태와 대책. 2001.
14.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환경위생정책구역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 학교환경위생정책구역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0.
15. 한준상. 청소년문제와 학교교육. 연대출판부. 1991.
16. YMCA. 청소년 유해환경의 전반적 실태에 대한 연구. 1989.